

■ 현장 리포트 ■

## 한국의 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 - ‘보노짓 후세인’사건과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혜실(한양대 문화인류학)

### I.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난민의 증가와 그 자녀들의 출생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결혼과 가족, 일터, 정책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인 부분에 이르는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국가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다문화주의’ 표방과는 달리 한국사회 내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일명 ‘보노짓 후세인 사건’<sup>1)</sup>으로 알려진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기에 이른다. 그러한 인종주의와 관련된 혐오나 차별행위는 사이버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서부터, 단순한 개인적 댓글달기뿐만 아니라, 일터와 시장, 거리, 지하철과 같이 이주자의 삶이 영위되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해 내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이주자는 ‘잠재적 범죄자’이거나 ‘왕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등의 낙인(stigma)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분리적인 차별 대상으로 제도화 되어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prejudice)이 악순환 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이주자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향이 다문화주의의 외피를 입고 있다고 해도 현실은 법과 제도,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젠더와 민족주의가 연결된 인종주의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다른 말

1)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2009년 10월16일 레이디경향 노정연기자 기사 참조바람

로 하자면 결국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인종주의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시민권(Citizenship)과 인권(Human right)의 문제가 젠더와 민족주의가 중첩된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보노짓 후세인’ 사건이었으며, 그러한 사건을 출발로 해서 2009년에 결성된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한국사회의 인종주의 문제와 다문화주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법무부는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체류 유형별 분류를 통해 체류자격(비자)을 부여한다.<sup>2)</sup> 그런데 만약 외국인이 이러한 체류자격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거나(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에 부여된 기간을 넘어 체류할 경우 미등록이주자인 불법체류자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 범주에서 소위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이주자의 경우 그들은 한국사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무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침해라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렵다. 즉 폭력을 당해도, 월급이 밀려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들은 그것을 사건화 하지 못한다. 즉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문제를 사법적 처리를 위한 첫 단계로서 경찰로 가져가는 순간 미등록임이 밝혀지면 추방을 당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은 해결을 바랄 수도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 이주자는 반드시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간접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노짓 후세인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그는 S대학의 연구교수였다. 그가 가진 체류신분은 자신이 당한 인종차별적인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신분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이주자들의 체류신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주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코 인종차별과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발생한 인종차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igrantion.go.kr>

별의 문제를 가지화하고자 할 때, 제도적인 장벽에 의해 해결자체가 어렵거나, 설사 체류신분이 합법적이어도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는 늘 이주자와 관련해서 불법체류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이미 내재화하고 있기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 일어난다. 다음 사례는 최근에 만난 난민 여성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한번은 택시를 탔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도 막 도는 거예요. 평소에는 2천원이 조금 넘게 나오는 거리인데 아저씨가 미터기와 상관없이 7천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보고 못주겠다고 하니 경찰을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G-1 있으니깐, 그래서 경찰 부르라고 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보니까 아저씨가 잘못 한 거라고 해서 4천원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아저씨 생각에 내가 불법사람일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찰 불러서 나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너 이제 걸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죠.(버지니아, 30대)

이는 흔히 일반 한국인들도 겪는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이나 바가지요금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요금에 대한 불만이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이 사례에서 더욱 민감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단지 요금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그것이 택시에 탄 난민여성이 백인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온 콩고사람이었기에 보이는 피부색이라는 측면과 그녀의 외모가 곧 불법체류자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연상되었다는 지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공권력인 경찰을 불러서 위협을 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인종차별은 한국사회가 어떻게 이주민들을 차별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상의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인종적 차별행위로 이어지도록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지점이다. 즉 제도적인 인종주의는 일상의 인종차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노짖 후세인’의 사건도 버스 안이라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일어났으며, 그 사건의 배경에는 피해자 당사자의 외모가 인도 출신으로서 다른 이주노동자와 구별되지 않았다는 지점에 있을 뿐 아니라, 그가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단순히 이방인이어서 낯설음으로 그를 다르게 바라본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쏟아진 폭언의 수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즉 그를 이주노동자로 간주하지 않고서는

발화될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인식의 문제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면서 한국 사람의 인식 속에 어떤 방식으로 각인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노짓 후세인’과 가해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리고 경찰이 가진 중재의 권한이 의사소통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동행했던 한국여성의 도움 없이 이러한 사건이 가시화되고 발언될 수 있었을 것인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 2010년 4월에도 있었으나 가시화되지 못한 적이 있다.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으로 접수 되었지만, 가시화 시켜낼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의 요약은 지하철 안에서 한 40대 가량의 남성이 태국 유학생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거칠게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지하철 안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노숙자가 벌인 해프닝 정도로 끝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문제는 피해자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해 가해자 남성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느낌으로만 불쾌감을 전달 받았다는 것이고,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날의 사건에 개입된 공익근무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조차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었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또한 사건화 할 근거가 너무 부족하여 이것을 가시화하지 못했다. 이렇듯 인종과 관련한 차별이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해 저항할 목소리와 문제로서 가시화할 수 있는 목소리는 제한 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자신이 문제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엘리트 계층의 이주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한국사회의 이주자들의 체류자격이라는 것이 정치적발언권 및 사회, 경제적, 문화권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타자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이다.

### III. 타자의 권리 : 시민권(Citizenship)과 인권(Human-right)

벤하비브(Sayla Benhabib)는 『타자의 권리(*The Right of Others*)』 책의 서문 앞장에 “어떤 인간도 비합법적이지 않다.”라는 문구를 뉴욕 퀸즈

의 2003년 「이주노동자자유연대」로부터 인용하며 책을 시작한다. 이 문구를 통해 정치적 성원권(Political Membership)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이 현존하는 정치제도에 외국인과 이방인, 이민자, 신입자, 난민, 망명객 등의 일국으로의 편입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권리와 정체성을 재의미화하며 국민을 한편으로는 운명과 기억 그리고 도덕적 공감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인종적 국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인종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가운데 민주적 과정을 통해 시민으로 합법화된 전체로서의 국민일 수도 있다면서 근대 민족국가를 이루는 모든 자유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다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성은 이 두 가지가 타협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말한다.<sup>3)</sup> 과연 한국인에게 있어서 ‘국민’이란 개념은 무엇일까? 신진옥은 오늘날 한국에서 시민과 국민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sup>4)</sup> 현재의 정책을 보았을 때 국민은 엄연히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한정되고 있다. 그러면 그 외 사람들과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인가, 아닌가? 우리에게 국민과 시민이 비슷한 개념이라면 시민권의 개념을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터너는 시민의 의미를 첫째 도시의 거주자(inhabitant), 두 번째는 거주자(inhabitant) 혹은 점유자(occupant)로서 거류민(denizen)과 동일시하고 세 번째는 국가의 성원으로 본다. 그러면서 시민권을 경제적 시장의 발달과 교환관계들의 확산과 연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교환관계들의 확산을 통해 법적 피지배자의 귀속적 특성을 놓고 차별하지 않는 형식적·합리적 법의 성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1997). 결국 세계화된 전지구적 상황에서 이주자의 유입은 일국의 이익만을 위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교환관계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또한 그러한 교환관계이기에 귀속적 특성에 따른 차별을 없앨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지구화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에게 제한된 권리로서 시민권이 아닌 너스름이 말한 ‘세계시민’<sup>5)</sup>이자 일국의 거주자로서의 ‘시민’에 대해 고

3) Seyla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이상훈 역, 『타자의 권리: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4) 신진옥, 『시민』 (서울: 책세상, 2008)

5) Martha Craven Nussbaum and Joshua Cohen,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 애국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한계 논쟁』 (서울: 삼인, 2003)

민해박야 하는 때인 것이다. 그것이 체류자격에 따른 불평등이 인권을 침해하며 인종차별이 되어버리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노짓 후세인’은 인도로 돌아갔다. 그의 체류자격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그가 우리 사회에 던져 준 인종주의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다.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것처럼 고용주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체류기간을 어길 시에는 소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계약 기간과 달리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자신의 국가체제를 벗어나서 국경을 넘어 이주해온 사람들과 한국인 배우자를 둔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체류기간이 민족적 혈연관계에 의해 연장되며 국적취득도 가능해진다. 특히 결혼이민자에게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더 빨리 주어진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사회의 혈연집단인 가족으로의 편입과 자녀출산이라는 민족적 재생산을 통해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더욱 쉬어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장결혼이라는 의심과 국적취득의 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권이라는 제도가 없는 한국사회에서 시민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적취득의 자격은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혈통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자격은 체류자격의 측면에서 같은 이주노동자일지라도 외국인과 민족이라는 구분을 통해 E-9(고용허가제)과 H-2(재외동포)로 구별하여 대우하는 출입국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 차별로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설사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묶어내는 민족적 공감이라는 것이 강제된 기억을 불러낸 것이며, 강제된 기억을 통해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sup>6)</sup>임을 알고 있기에 ‘단일민족신화’를 깨뜨려 다문화사회의 걸림돌인 민족의식을 바꾸자는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이미 제도화된 민족주의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 민족과 민족이 아닌 사람으로 타자인 이주자들을 분리해내는 것은 곧 제도적 포섭과 배제라는 구조적 차별을 공고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이주자이자 소수자로 오랫동안 살아 온 화교들과 최근 이주해 온 이주자들을 비교해 볼 때 국가 밖으로 부

6) Benedict R.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성찰』 (과주: 나남출판, 2004)

터 이주한 외부자라는 면에서 차별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결혼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조선족이나 사할린동포 등과 같이 이주자이지만 민족으로 호명되어 다른 신분적 지위를 얻어가는 과정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민족주의가 인종주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sup>7)</sup> 즉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체류자격의 분류와 체류자격의 부여는 은폐된 인종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체류자격에 따라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국적을 가지는 것과 인권의 문제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타자의 권리이다. 체류자격조차 없는 미등록 신분인 이주자(불법체류자와 무국적자)와 제한된 체류권을 가진 등록 이주민(합법체류자) 그리고 국적 취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자(결혼이민자와 동포)와 지속적인 체류는 가능하지만 국적부여는 불가능한 이주자(화교 등)의 시민권 행사와 인권보장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체류자격과 상관없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지만, 시민권이라는 보장 없이 보편적 인권 실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고민스러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주자의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 하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

현재 안산시만 해도 ‘외국인 주민 조례’라는 법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연구용역을 수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십분 활용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의 3만이 넘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뜻 깊은 의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범주의 문제이다. 이는 안산시 조례제정 과정 중에서도 드러난 문제인 것인데 과연 ‘외국인’이란 누구인가이다. 그들의 프로젝트 공모에 보면 외국인의 범주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아동, 중국동포, 기타 등’으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중에 중국동포를 외국인

7) Bryan S. Turner, *Citizenship and capitalism: the debate over reform*, 서용석, 박철현 역,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울: 일신사, 1997)

으로 보는 것과 결혼이민자 중 귀화 한 사람들도 여전히 외국인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외국국적이라는 것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사람들 까지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시각과 이주의 관점에서 이주자들을 조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귀화라는 신분적 취득을 통해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명시되지 못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이주노동자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켜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안산의 거주하는 주민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귀화는 했으나 G-20유치에 따른 외국인 단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주자들은 주민등록상 자신이 귀화한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다. 인종적으로 이주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인종적 구별로서 외국인을 가려내고 있기에, 그러한 단속의 기준으로 인해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파키스탄 남성과 재혼한 케이스인 한 여성은 남편과의 결혼으로 한국에 오게 되어 초등학교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자신이 키운 아들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 하였다.

어느 날 아이가 원곡초등학교 옆을 걷고 있는 출입국사람이 와서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가 크니까 불법체류 단속한다면서 막 끌고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나 한국사람이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자 풀어 주었다는 거예요.(아이샤 : 파키스탄이름, 30대)

이와 같은 단속상의 무분별함은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단속기간이 되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항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현실은 국적이나 체류자격보다는 인종적 구분을 통해 단속을 하려는 태도로서 이것이야말로 인종차별 그 자체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백인의 불법체류단속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과거 2003년도에 영어 스터디를 위해 초빙되었던 캐나다 여성은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당당히 밝혔다. 체류기간이 훨씬 넘은 상황에서 여전히 영어교사를 하고 있었고, 집은 강남이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며 한 번도 단속을 경험한 일이 없었다. 체류자격이 분명히 있어도 영어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는 다른 이주자들의 경험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앞서



인터뷰했던 난민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백인 중에서 블론디 여성은 1순위고, 그 다음은 머리카락이 브라운 블랙 팬찮아요. 그 다음은 백인 남성이구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프리카인인데 조금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리핀 팬찮아요. 그 다음 우리처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죠. 만약에 필리핀 여자 영어 나보다 못해도 그 여자 팬찮아요. 나는 블랙 때문에 될 수 없어요. 나 돈도 적게 받아요. 백인 아니니까... (버지니아, 30대)

이러한 채용의 순위에 따라 임금의 순위도 매겨진다. 따라서 인종적 서열은 경제적 서열을 만든다. 그런가하면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백인에게의 자유로운 사회가 한국사회이다. 그에 비해서 비백인 이주자는 합당한 체류자격이 있어도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는 민족주의와 시민권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상호결정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서는 실현되지 못할 허구적 이념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전체 이주자 중 10%인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10%를 위한 정책조차도 사실상 인종적 서열위에 근거해 있다면 무슨 다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표1) 외국인 체류현황(2009년말 기준)

총 외국인 1,168,477 (100%)							
총 이주 노동자 (690,611) (59.10%)				결혼이민, 유학, 기타 (477,866) (40.90%)			
전문인력	비전문 (461,203) (39.47%)		단기취업 등	미등록	결혼이민	유학	기타
	일반	동포					
35,536 (3.04%)	158,198 (13.54%)	303,005 (25.93%)	15,917 (1.36%)	177,955 (15.23%)	125,087 (10.70%)	80,985 (6.93%)	271,794 (23.26%)

출처: 2010년 외국인이주 노동자협의회 정책토론회

#### IV. 젠더(Gender)와 혼혈(Half-blood / Interracial)

‘보노깃 후세인’사건은 본인 혼자만 피해를 경험한 사건이 아니었다. 앞

서 이야기 했듯이 동행한 한국여성이 있었다. 동행한 한국여성이 보노짓 후세인을 단순히 통역하고 돕는 차원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동행한 한국 여성을 향해 동시에 폭언과 성폭행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조망은 남성인 이주자 ‘보노짓 후세인’에 맞추어서 이슈화되었고 한국여성의 인종주의와 결부된 젠더의 문제는 크게 가시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그 여성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사건이 있고 벌써 2개월째이지만 아직도 미디어에서 (많은 경우 따라잡기식)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기사 봤어요” 하고 다가오면 반갑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어 오는 대부분의 코멘트는 “보노짓 씨 힘들었겠어요” 입니다. 제가 “저도 힘들었고 아직도 힘들어요”라고 대답하면 “친구가 그렇게 됐으니 당연히 그렇겠죠”입니다. 그럴까요? 저는 제 자신을 성-인종차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피해자’라는 말이 싫지만 여기서 필요하군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기자, 동료, 가족을 불문하고)은 그 경험과 해석을 어려워합니다.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좋으냐”라는 말, 신변보호 요구에 대한 공권력의 무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보기를 경험을 해 본다면 이해가 더 쉬울까요? 보노짓에 대한 “인종차별”은 알라도 ‘성-인종차별’은 잘 받아들여지지, 이슈화되지 않는 일은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저도 박씨에 대한 고소인이자 부친중부경찰서 및 계남지구대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인이라고 이야기 하면 전혀 몰랐다가거나 그럴 수 있는 위치냐고 묻기까지 합니다.(중략)

위로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 언론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국내외의 비슷한 케이스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내고, 기지촌 여성 및 “혼혈인” 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척 문제로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건의 중요성과 행동의 의의가 반쪽이 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쓰립니다.>(익명요구, 20대)

이러한 그녀의 글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국인인 이주자가 한국의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즉 한국사회가 가진 인종주의 문제에 한국여성이라고 하는 젠더적 상황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좋으냐”라는 언

설에서 드러나듯이 조선년으로 불렸다는 것은 이미 민족과 젠더가 중첩되어 새까만 자식이라는 인종주의와 결부되어 나타남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기지촌여성의 경험과 그녀들에 대한 호칭이었던 “양공주”라는 명명과 무관하지 않은 역사적 맥락 안에 놓여 있는 것이며,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처럼 이주노동자남성과 한국여성들로 결합된 가족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이주노동자 남성의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지위와 외모에서 드러나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만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인종의 이주자와 결혼했던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연애를 하거나,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인 여성들이 민족공동체를 재생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망각했기에 문제적이며, 민족의 순혈주의를 위협하기에 문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서구남성에게 몸을 팔던 여자들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서 ‘양공주’라는 이미지를 여전히 투영하여, 국내적·민족적 가부장제와 국외적 서구적 가부장제 양자의 희생자였던 여성을 성노동자계급으로서, ‘양공주’라는 비난의 시선 속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게 만들어 온 것이다.<sup>8)</sup> 따라서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에 대한 담론은 이주노동자의 성적 욕망의 대상자이자 국적을 위해 희생되고 이용되는 피해자 한국여성이며, 그들이 국적을 취득한 순간 노동자 계급을 뛰어 넘는데 이용되는 발판일 뿐 이라고 말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여성의 몸을 대신해서 민족공동체의 출산의 의무를 짊어진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지원은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의 가족지원에 비해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순혈주의에 대한 위협은 사라진다. 따라서 그 자녀들은 갑자기 혼혈아나 튀기가 아닌 ‘다문화가정자녀’라는 말로 순화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여성은 소위 ‘애국자’가 된다. 이는 거창에서 필드조사를 할 때 동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다.

요즘 한국여자들은 못써. 시집도 안가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거 필리핀하고 베트남에서 온 여자들은 애를 막 둘 셋씩 낳아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애국자지.(한국남성, 70대)

8) Elaine H. Kim, 최정무 (ed.) *Dangerous Women*, 박은미 역,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위험한 여성』 (서울:삼인, 2001)

농촌의 노인인구 증가, 젊은 층의 감소로 인한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며 농촌에서 아이들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결혼이민자여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민족적 재생산의 의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결혼이민자여성의 몸은 사실상 ‘출산의 도구’이자 고령화된 농촌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민자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평가가 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첫 번째로 피부색과 같은 외모적인 이유로 인한 왕따의 문제를 화두로 삼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유입 비율을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외국인부모의 비율이 60% 이상이며, 그 외 몽골이나 베트남 출신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 출신의 자녀들이 외모적으로 한국인과 구별되나 하면 다문화가족협회의 회원 가족들인 다마얀이나 하와까마이를 봐도 그 비율은 적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차별에 해당하는 피부색에 의한 왕따의 문제는 문제보다 현상을 과도하게 보도하는 미디어의 책임이 더 크다. 사실 왕따의 문제는 한국사회 전반의 학교문제로서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고를 키우지 못하는 학교의 인권부재 교육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할 수 있기에 이것이 마치 전체 다문화가정자녀들이 반드시 겪는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편견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습능력의 저하로서 늘 다문화가정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중 강조되는 것이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한국말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학습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학습능력이란 얼마나 좋은 학원에 비싼 돈을 들이는가와 좋은 과외 선생을 어떻게 아이에게 붙여 주었는가와 직결되어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즉 학습능력이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자녀들이 비싼 사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며, 엘리트 계층들이 공유하고 정보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일 뿐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교육에 있어서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 부모가 외국인 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지점이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자녀의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교과부나 일부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멘토링 교육을 고안해 내었다. 여러 NGO에서 결혼이민자여성들의 모국어를 통한 자녀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도외시 되었던 문제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

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인지되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는 언어교육으로 이중언어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언어란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쉽게 적응되는 것이지만, 실상 한국사회가 영어를 우선시 하고 있고, 이주자들 스스로도 영어의 가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우월한가를 피부 깊숙이 느끼고 있기에 모국어 보다는 영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엄마들도 따갈로어 보다는 영어를 교육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가족내 관계에서도 베트남어나 몽골어 등의 사용에 대해 여전히 꺼리고 있고, 그러한 언어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부모나 남편의 태도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중언어 사용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존중과 포용 없이는 쉽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항상 결혼이민자여성의 모성이 저평가되는 지점으로서 양육능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이다. 안산의 글로벌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한 실무자는 “이유식을 모른다”, “아이들 밥을 먹이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이 자신의 모국의 양육방식을 실천하고 싶어도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니 한국식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정상적 교육이라는 오만과 편견 때문에 아이 양육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에서 오는 편견일 수 있다. 그러한 편견은 그녀들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태도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예전 60년대부터 70년대에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혼식과 빵 그리고 우유를 권장하는 식단을 권유받은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그 정상성의 기준은 서구적 식단이였다. 그들의 육체적 건강성이 정상으로 표상되고 한국인의 몸은 비정상인 것으로 규정되면 서구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몸을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린 다시 결혼이주여성들의 신체를 한국인의 표준적인 몸과 체질량이라는 과학적 기준을 들어 평가하면서 그녀들의 영양섭취와 자녀의 영양섭취를 걱정하고 있다.<sup>9)</sup> 이젠 서구를 따라잡은 우리의 식문화와 건강한 몸에 대한 기준이 다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과연 우리식의 식단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결혼이민자여성이 낳은 자녀는 한민족의 핏줄로서 한국인으

9) 2010년 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제3분과 여성의 삶과 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식문화 적응』 신원선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발표

로 체질화하도록 키워야할 민족적 사명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한국인 여성의 몸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몸 그리고 그 자녀는 인종주의와 성 그리고 계급적 지위와 민족주의가 결부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한티(Chandra Talpade Mohanty)가 이론이란 경험의 추출이며 개인적인 것의 심화여야 하며, 최선의 이론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성차별주의자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역사와 지점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부담 혹은 특권에 의해 분명히 규정됨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차이와 권력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론화하며 이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가 인종 · 계급 · 젠더 · 국가 · 섹슈얼리티 · 식민주의를 정제되고 체현된 범주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즉 우리의 생활과 근본적으로 뒤얽힌 역사와 경험 속에서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sup>10)</sup>

## V. 나가는 말

2009년 보노짯 후세인 스스로는 자신이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리라고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올 때 미처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한다.<sup>11)</sup> 그리고 그

10) Chandra Talpade Mohanty, *Feminism without borders: decolonizing theory, practicing solidarity*, 문현아 역, 『경계 없는 페미니즘』(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5)

11) “지구화와 함께, 우리는 또한 국가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이주가 여러 층위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목도해 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종적이고 종족적인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들이 또한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 아시아의 미디어들은 대개 서구 국가들에서 인종적으로 학대당하는 아시아인들에 대해 보도한다. 가장 최근의 극적인 사건은 지난 1년 동안 호주에서 인도 학생들에게 가해진 끔찍한 인종주의적 폭력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주자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주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도에 있는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 대해서건 한국이나 일본처럼 발달된 아시아 경제 내에서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건, 우리는 손쉽게 이것을 환경으로 밀어놓거나 기껏해야 알기에는 곱씹어준 것으로 여긴다. (중략)인도와 한국 같은 사회는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다.(중략)3년전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나 또한 내가 인종주의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나 또한 비백인 제3세계 국가에서 비록 경제적으로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비백인 아시아 국가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자들(그들 대부분은 공장 노동에 종사한다)은 열등한 존재로 경멸당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다.(중략)“검둥이 자식” “아랍” “냄새나” 등등의 고탈소리를 듣는다.(후략)”

사건을 가시화하고 이슈화하기 위해 함께 모였던 성·인종차별대책위원회가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으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성(gender)차별과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데 발단이 되었으며 그 시작의 중요한 밑거름이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차별들-임금차별, 근로조건의 차별, 한국말 습득의 강제 이수(사회통합이수제), 체류자격의 차별, 공권력의 부당한 차별 등등-이 무수히 있어 있었지만 그것을 그저 차별이라는 말로 하기에는 부족한 표현이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 명시화해주었다. 즉 ‘인종차별’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외국인남성과 결부되는 한국여성과 한국인남성의 배우자로 들어오게 된 그 자체가 이미 낙인이 되어버린 결혼이민자여성의 문제가 성차별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에 민족과 계급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음을 해석해 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장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최근 10월22일에는 이미 뿌리내려버린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토론회에서 당사자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이야기들의 결론은 무딘 감수성과 일방적인 정책으로 일상에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이주자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한국사회의 성·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이론적 뒷받침을 해줄 학자들과 현장의 사례를 모아 줄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의 틀 속에서 글을 쓰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모아진 힘으로 이주자들(migrant)에 대한 사회인식과 제도 그리고 일상의 삶을 변화시켜 내야 할 것이다.

hyesil337@hotmail.com

---

2009년 12월, 보도짓 후세인 보내온 메일로 후에 『한겨레신문』에 게재됨.